

## 5. 카리타스복지연구소 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소재) 본 연구소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카리타스복지연구소라 칭하며 꽃동네대학교 내에 둔다. (2011.7.1. 자구수정)(2019.2.8.개정)(2021.6.22.개정)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가톨릭 이념에 부합하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(2020.2.6.개정)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신학, 사회복지학, 심리학, 간호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연구(2020.2.6.자구수정)
2. 국내외 대학, 연구소 및 연구기관과의 학문적 교류 증대 (2020.2.6.자구수정)
3. 정기 간행물 및 비정기 간행물의 발간
4. 정기적인 연구발표, 공개강좌 및 부정기 학술회의 개최
5. 학술용역사업
6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# 제 2 장 조직 및 임원

제4조(연구원)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객원연구원) ① 소장은 제4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객원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. (2020.2.6.자구수정)

② 객원연구원은 국내·외 학자나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공헌을 하고 있는 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(2020.2.6.조항추가)

제6조(연구부)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 연구부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임직원) ①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.

- 1) 소장 : 1명
- 2) 운영위원 : 약간명
- 3) 간사 : 1명

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교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8조(임명) ①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원은 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수들로 하되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. (2012.7.1. 자구수정)

③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④ 간사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되,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9조(임기) 본 연구소 임원(소장, 연구위원, 간사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직무)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
③ 간사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④ 직원은 본 연구소의 일반사무를 처리한다.
- ⑤ 조교는 본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보조한다.

#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11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연구소의 운영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.
- ③ 위원은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연구원 중 약간인과 외부위원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(2020.2.6.개정)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연구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-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③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
- ④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
- ⑤ 기타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3조(소집) 운영위원회는 매년 3월중의 정기회의와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
제14조(의결)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,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# 제 4 장 재정 및 보고

제15조(재원) 본 연구소의 경비는 본 대학교의 연구보조금,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.

제16조(회계년도)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17조(보고) 본 연구소의 소장은 총장에게 다음 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① 연구소 운영보고서(당해년도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활동 실적) 및 결산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활동 실적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변경) 본 연구소 규정의 변경 및 해산결의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